

【문 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기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도 청구할 수 없다.

【문 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추정력으로 등기가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④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5】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 ④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 6】 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였더라도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②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③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7】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신원 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특정 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상소의 제기과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0】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②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③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문1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보조참가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문12】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③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사실만을 증명하면 20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④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1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 ④ 가등기담보법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5】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토지교환계약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

【문16】 변제로 인한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가지는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다.
- ②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로 인한 대위도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
-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러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문17】 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양자가 될 자는 그가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친양자 입양의 성립이 확정된 때로부터 친양자의 종전 친족관계는 장애를 향하여 종료하므로 친양자에게 이미 발생하였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문18】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 ④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9】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입하는 경우 종전 수임인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었다면 종전 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 ②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20】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③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문21】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②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청구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고,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되 심리도중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과납 인지 대금 환급 또는 인지보정조치를 취한다.
-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문22】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시기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②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유효한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을 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23】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송부문서가 도착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 없이 증거자료가 된다.
- ③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지만,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자를 제재하는 수단은 없다.
- ④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문24】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먼저 본소로 그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후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다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

【문25】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고, 상소에 의해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까지 경정할 수는 없다.
- ②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 원금이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으로 누락된 원금 부분을 추가할 수 없다.
- ③ 경정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나, 판결상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원래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④ 판결경정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또는 경정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 모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26】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도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 ②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은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④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고,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통상항고이다.

【문27】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친다.
- ②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더라도 그 서면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문28】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또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② 소액사건을 제기한 후 다른 소액사건을 병합함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소액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성질상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민사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A가 B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C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C가 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C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B로서는 더 이상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9】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결정될 뿐, 실제로 이행청구권자 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3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에 대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31】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절차에서 자기에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변론준비절차나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③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보조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 자백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32】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고, 만일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못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급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이송받은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문33】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은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하거나,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34】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②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③ 수소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에 회부된 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조정기일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문35】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 ②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통지 및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법한 기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을 받은 이상은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④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판결서 정보를 송달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36】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재판 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조결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나, 소제기 이전에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척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④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문37】 보증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는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물론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한 후에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④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으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 그 뒤에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문38】 소의 취하 및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심리를 속행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③ 화해조서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 ④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나,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문39】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생긴다.
- ②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러한 참가는 공동소송참가가 된다.
- ③ 공동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문4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② 임대차종료의 원인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③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이나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약정사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